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49

발의연월일: 2023. 1. 12.

발 의 자:이태규·김선교·김영식

배준영 · 윤두현 · 이만희

이명수 · 조은희 · 최승재

최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 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 · 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 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제2호의2"로 한다.

2의2.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국가·인종·성별·연 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혐오·차별정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혐오·차별 정보를 유통한 자
- ③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④ 제1항제1호의2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u>.</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
	하지 아니하고 국가・인종・
	<u>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u>
	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
	오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
	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
	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혐오・차별정보"라 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② <u>제1항제1</u>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 ㆍ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u>설>

2. ~ 5. (생 략) <신 설>

<신 설>

	<u>제1항제2</u>
	호, 제2호의2
	③・④ (현행과 같음)
제	72조(벌칙)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혐
	오·차별정보를 유통한 자
	2. ~ 5. (현행과 같음)
	③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제1호의2의 죄는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바하여 고소를 제기하 수 있다